

복장의 종류 및 착용 시기(제18조 관련)

구 분	내 용	착 용 시 기	비 고
정 복	정복(바지), 정모, 흑색 양말, 흑색단화	- 각종 의식 및 행사 - 휴가 및 외박 - 교내수업 -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	정복의 소매수장은 「소방공무원 복제세칙」에 따라 1줄로 함.
근무복	근무모, 근무복, 흑색양말, 흑색단화	- 교내활동 - 기타 지시가 있을경우	
활동복	활동모, 활동복	- 현장활동 수업 -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	
체력단련복	체력단련복, 백색양말, 활동화(운동화)	- 체육활동 -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	
무도복	무도복, 운동화, 띠, 백색T(여)	- 무도활동 -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	
점 펴	점 펴	- 교내활동 - 기타 지시가 있을 경우	

※ 후보생 복장은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을 준용하고 소방위에 준한다.